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55
----------	------

발의년월일 : 2019.10.25.  
발 의 의 원 : 김지만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박갑상 의원  
송영헌 의원  
윤영애 의원  
이만규 의원  
임태상 의원  
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

## 1. 제안이유

현재의 조례는 포상과 관련한 허위 공적 또는 보충자료의 위조 등으로 기수상자의 포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취소할 적절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구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포상취소의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제3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상훈법」 제8조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다. 예산 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붙임2)

# 관 계 법 령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